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택수당 지급시 주택임차료 시세 고려〉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94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8.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현행법이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정안은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로 하여 주택수당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을 의무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4조(주택수당) ----- ----- <u>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u>

□ **현행 군인(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 등 제외) 주거지원 정책**
간략히 보면, 「군인복지기본법」¹⁾에 따라 ① 군관사 또는 독신자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숙소(이하 “군관사”) 제공이 원칙이며, 군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한하여 ②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무지역 내 자가 보유 또는 군관사 부족·노후화 등의 이유로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보수법」²⁾ 및 이에 근거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³⁾에 따라 ③ 지역구분없이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주택수당은 198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이후 월 8만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주택 임차료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주택수당 금액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군관사 건립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2) 「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 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월 지급액	비 고
1. 군 인	16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주택수당 지급액 수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또한, 개정안은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주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무지 이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무여건의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적절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정책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군인복지기본법」이 주택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군관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급지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연구분석 및 관계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립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군관사가 아닌 주택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재 건립된 군숙소의 운용률 저하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제도(군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를 고려할 때 군관사 확보·개선 및 지역별 시세를 고려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현실화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